통상임금 소송 TIME LINE

삼성전기 존중노동조합

2025.07.02(수)

작성자 : 신훈식

담 당 : 존중노조 위원장 신훈식

주 소 :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19 광교 더 퍼스트 지식산업센터

전 화 : 010-9496-6517

이메일: hoonsik.sin@samsung.com

내용

귀성 여비(설, 추석)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 대한 경과 공유

○ 통상임금 소송 진행 경과

'24년 02월 26일



[존중노조] 소송단 모집 시작

03월 27일



04월 04일



원고(노측) 소송대리인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

07월 10일



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(취업규칙,임금지불 현황 등)

08월 19일



12월 19일

※ 현대차 및 한화생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

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제외 판결(노측 승소, 다른 소송에 영향력大)

'25년 01월 13일

※ 기업은행 노조

다른 노조의 통상 임금 소송에 대법원이 파기환송(노측의 사실상 승)

01월 23일

※ 세아베스틸 노조

다른 노조의 통상 임금 소송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파기환송(노측의 사실상 승)

03월 13일

※ 여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

다른 통상 임금 소송에 대법원이 파기환송

03월 26일

1심 1차 변론 진행(수원 지방법원)





05월 21일

1심 2차 변론 진행(수원 지방법원)

06월 26일

※ 전직 기아차 직원의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은 통상임금

다른 통상 임금 소송에 대법원이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(추가 심리없이 원고승소 원심 확정)

08월 27일

1심 3차 변론 예정(수원 지방법원)

[맺음말]

'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,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 후 다른 노조에서 진행한소송에서 노측에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만큼, 저희도 희망을 가져볼만합니다.